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5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수진 · 민병덕 · 이기헌

문진석 · 송옥주 · 민형배

한정애 · 송재봉 · 서미화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절·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

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을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배출을"로 한다.

제3조 중 "재활용 촉진"을 "재활용 촉진 및 유해성 방지"로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으로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물에 녹지 않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 배출 저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전자제품 또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 제1조(목적) ------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 -----재활용을 촉진 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 사용 • 배출을-----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 전기 ·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 재활용 촉진 및 유해성 방지--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재질 · 구조 개선지침 등) 제10조(재질 · 구조 개선지침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신 설> 업자와 자동차 제조 · 수입업자

③ (생 략)

-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 침을 <u>위반한</u> 경우에는 그 지침 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가 제3형 른 지침을 위반한-----

⑥ (생략)

<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u>
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유해물질(물에 녹지 않는 5
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
틱을 포함한다)을 저감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
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4항</u>
<u>⑥</u>
<u>위반하거나 전기·전자제품</u>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3항에 따
른 지침을 위반한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 적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출	스(재혹	탈용촉	진을	위한	난 권고
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	()조제	<u> 6항</u>			